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에 대한
책임자 등 승낙거부 제한 〉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04호)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11호)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82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 제안경위

1. 박범계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범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14.

다. 회 부 일 : 2025. 4. 15.

2. 윤건영의원안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4. 22.

다. 회 부 일 : 2025. 4. 23.

3. 이광희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5. 6. 30.

다. 회 부 일 : 2025.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범계의원안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0조 및 제111조).

2. 윤건영의원안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과 그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당 관서장의 임의해석으로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의 승낙 권한을 갖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관리·취급하는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갖도록 해 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 신설).

3. 이광희의원안

현행법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압수를 막아서며 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수사 대상 스스로가 증거 인멸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먼저, 이광희의원안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공무상 비밀 관련 물건의 압수와 관련하여, 그 책임자 등이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대상이면서 해당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한 경우, 그 책임자 등이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이 거부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때에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반면, 윤건영의원안은 그 책임자 등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인 경우, 해당 책임자 궐위 시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박범계의원안은 이광희의원안과 유사하게 법원 소명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나, 그 책임자가 수사대상인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승낙을 거부한 경우 전제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이광희의원안	윤건영의원안	박범계의원안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軍事上 秘密을 要 하는 場所는 그 責任者의 承諾 없 이는 押收 또는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현행과 같음)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 ----- ----- -----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현행과 같음) ※ 한자 용어만 한글 용어로 정비

현행	이광희의원안	윤건영의원안	박범계의원안
搜索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②前項의 責任者 는 國家의 重大 한 利益을 害하 는 境遇를 除外 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책임 자가 압수·수색 의 원인이 된 사 건의 수사 대상 이고 해당 압수 ·수색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 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 자가 법원에 출	-----. 다만, 책임자가 피고사건과 관계 가 있거나 피고 인인 경우에는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 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책임 자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 ----- -----.	② (현행과 같음) ※ 한자 용어만 한글 용어로 정비 ③ 제1항의 승낙 을 거부한 경우 에 그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 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현	행	이광희의원안	윤건영의원안	박범계의원안
		<u>석하지 아니하거</u> <u>나 거부사유가</u> <u>국가의 중대한</u> <u>이익을 해하는</u> <u>경우로써 인정되</u> <u>지 아니한 때에</u> <u>는 동일한 사유</u> <u>로 인한 압수·</u> <u>수색에 대해서</u> <u>승낙을 거부하지</u> <u>못한다.</u>		<u>때에는 동일한</u> <u>사유로 인한 압</u> <u>수·수색에 대해</u> <u>서 승낙을 거부</u> <u>하지 못한다.</u>
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 ① 公務員 또는 公 務員이었던 者가 所持 또는 保管 하는 物件에 關 하여는 本人 또 는 그 當該 公務 所가 職務上の 秘密에 關한 것 임을 申告한 때 에는 그 所屬公 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의 承 諾 없이는 押收 하지 못한다. <u><단서 신설></u>	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 ① (헌행과 같음)	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 ① ----- 		

현행	이광희의원안	윤건영의원안	박범계의원안
②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 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가 해당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의 책임자	<u>고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가진다.</u>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한자 용어만 한글 용어로 정비 ③ 제1항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현행	이광희의원안	윤건영의원안	박범계의원안
	<u>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u>		<u>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u>

법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현행 제110조¹⁾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제111조²⁾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
- 1)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2)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

관하여는 본인이나 담당 기관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책임자나 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승낙 거부 사유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한정됨.

이들 규정은 현행법 제219조³⁾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되며,⁴⁾ 이 중 제110조는 제145조⁵⁾에 따라 검증에 관하여도 준용됨.

현행 규정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시설의 책임자 또는 담당·감독기관에게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한 거부권한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진실 발견이라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 거부권의 한계를 설정한바, 이는 그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임.⁶⁾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형법」상 내란죄 혐의 수사과정 시 경찰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음.⁷⁾ 이는 국가적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에 대

부하지 못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또한, 현행법 제184조제2항에 따르면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으므로, 판사가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 제110조·제111조가 적용됨.

5) 「형사소송법」 제145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6)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사소송법(Ⅰ)」, 제5판, p591, p593

7) 연합뉴스,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경호처 불허에 진입 실패”, 2024. 12. 11.

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나아가 국가존립을 위한 형벌권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위 규정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었다는 문제제기로 이어졌음.

이에 개정안은 위 사례처럼 군사시설 책임자 등이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한 경우 법원 소명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하거나(이광희의원안·박범계의원안), 책임자 등이 해당 사건과 관계된 경우 그 책임자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윤건영의원안),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거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군사시설 등의 책임자가 해당 수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그 책임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번 계엄 관련 수사처럼 ‘국가이익의 침해’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봄.⁸⁾

다만, 이광희의원안 중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부분이나 윤건영의원안 중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⁹⁾인 경우” 등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¹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까지 군사

8) 참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건영의원안 및 이광희의원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9) 한편, 압수·수색은 아직 기소되기 전 ‘피의자’ 신분인 단계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사건’ 및 ‘피고인’ 등의 용어는 피의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상·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승낙거부를 제한할 것인지 그 범위 및 세부요건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바, 승낙거부 제한규정이 적용될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책임자 등 궐위 시 직무를 대리할 자가 승낙권한을 갖도록 하는 윤건영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직무를 대리할 자’ 또한 그 책임자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기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¹¹⁾ 나아가 그 책임자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직무를 대리할 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그 책임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압수·수색을 승낙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바,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¹²⁾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¹³⁾이 발의되어 있는바, 개정안은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같은 의견임.

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같은 의견임.

12) 추미애의원안(의안번호 제2206807호), 박상혁의원안(의안번호 제2207046호), 정일영의원안(의안번호 제2207350호), 주철현의원안(의안번호 제2207457호),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제2207481호), 백혜련의원안(의안번호 제2207589호), 박수현의원안(의안번호 제2210434호)

13) 한병도의원안(의안번호 제2207196호)

문 의 처
02)6788-5048